

CRCNA 종교 핍박과 자유에 관한 연구 위원회

최종 보고서

2016 년 총회를 위한 준비
미시간 주, 그랜래피즈

I. 도입

크리스천이 받는 핍박은 지구 전역에서 일어나고 점점 커져가는 문제다. 너무 많은 곳에서 크리스천들은 매일 잔인한 폭력과 괴롭힘의 공포를, 국가의 수단이든 사회내 과격파든, 맞닥뜨린다. 그들의 고통은 다급하게 크리스천들의 대응을 바라며 울부짖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긴장에 직면한다. 한편에선 압제하는 정부의 수단과 적대적 대중에 의해서 고통받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핍박받는 자를 “복있는 자” 라고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하늘 나라를 약속하셨다(마태 5: 10). 다른 한편에선 교회는 핍박을 크리스천이 마땅히 싸워야 할 악으로 경험한다. 크리스천이 핍박을 다루는 노력은 반드시 핍박받는 자들의 “복됨”과 핍박의 불의 사이의 긴장을 다뤄야만 할 것이다

II. 우리가 받은 지시(mandate)

우리는 지구촌 전역에서 일어나는 종교 핍박과 위협 문제에 대한 북미주개혁장로교단의 반응의 첫 단계로 이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종교자유와 종교핍박의 불의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기초작업을 확인하는 개혁주의 틀을 제공하기.
- 북미의 세속화 상황에서 교회가 국내 외에서 종교핍박을 받거나 종교자유를 거부당한 이들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개인·단체적 행동을 제안하기.

(2013 년 총회 결의안, p. 641)

이 목적들은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하지만 본 연구위원회는 사실 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데 성경과 교회의 역사적 경험이 제공하는 예리한 통찰의 혜택을 받았다. III 항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종교핍박 문제를 평가하는 데 상호연관된 세 가지 - 석의적, 역사적, 고백적- 상황을 탐구한다. 본 보고서의 제 IV 항은 오늘날 세계에서 체험되는 핍박 문제를 다룬다. V 항은 결론부로서 본위원회가 교회를 위해 건의한 내용이다.

III. 문제의 상황: 세 가지 기독교적 관점

A. 성경의 이야기: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와 전 창조와 더불어 갖는 바른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 성경은 이 관계들을 *살롬*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은 타락이 이 관계들을 부숴뜨렸다. 성경을 관통하는 내러티브는 핍박이 *살롬*을 상실한 결과들 중 하나라고 암시한다. 하지만 성경은 핍박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역사와 심지어 복주시는 역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핍박을 주지 않으나 하나님의 구속목적이— 로마당국과 분노한 군중의 영원이 함께 한 복잡한 정황의 결과로 고난받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구체화되고 실현된 것처럼—핍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계시하셨다.

우리는 산상설교에서 핍박에 관한 예수님의 진정한 교훈을 발견한다. 산 위에서 예수님은 청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10-12

조금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부언하신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 5:44-46. 참조 누가 6:27-36).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의 말씀대로 행동한다. 이 반응이 결국 한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제국을 변화시켰다. 그 반응은 스테반의 이야기에서 아름답게 예시되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테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적들을 용서하셨듯이 자신의 핍박자들을 용서하면서 기도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행 7:60). 하나님은 스테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소 사람 사울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어, 마침내 기독교 최초의 최악질 핍박자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당시 세계 전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된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핍박의 때에도 선을 계시하신다. 하지만 성경은 핍박의 고통을 축복으로 여기고 참아야 한다는 메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 특히 우리 중에서 신앙의 실천을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실천하는 이들의 의무는 그 자유를 이용하여 올바른 관계 회복과 타인을 위해 동일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중 혹독한 핍박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 메시지로 촉구한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히 13:3).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핍박중지나 종교자유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핍박의 때에라도, 양심을 따르다 소중한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지라도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살롱**을 누리길 추구한다.

B. 보편 교회의 이야기: 역사적 관점

이미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사도시대부터 핍박을 경험했다. 기독교 시대의 첫 3 세기 동안 항상 핍박의 위협이 계속되었고 너무나도 자주 핍박은 잔혹한 실재였다. 4 세기에 예기치 않게 기독교 신앙이 황권의 호의를 입었을 때 마저, 통치자들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종교적 순응을 강요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제도화된 기독교는 핍박을 벗어났지만, 교리·실천상 결핍된 자로 교회의 판결을 받은 이들은 종교핍박을 겪었다.

비순응자들에 가해지는 압박은 간헐적이지만 종종 무자비하게 지속되었다.

기독교 제국은 4세기부터 7세기까지 시리아 그리스도인들과 콥틱 그리스도인들을 번갈아가면서 달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했다. 이 지속되는 압박과 간헐적 핍박으로 중동 그리스도인들은 7세기에 등장한 이슬람 침략군을 환영하고 만다. 무슬림 왕국에서 이등계급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 지배가 정통 기독교 통치자들의 핍박보다 더 낫다고 여겼다. 하지만 13세기까지 무슬림 왕국들이 투르크족과 십자군, 몽고인의 공격을 받으면서 크리스천에 대한 핍박이 강해졌다. 순교를 받아들인 크리스천도 있었고, 배교하여 이슬람에 개종한 이들도 있었다.

서방 기독교세계에서 초기 중세시대부터 1648년 30년전쟁 말까지 비순응자에 대한 종교핍박의 유형이 지속되었다. 우리 개신교종교개혁 선구자들도 이 유형을 깨뜨리지 못했다. 개신교 내부의 긴장은 루터교인과 개혁교인 사이의 적대감을 낳았고, 이것이 30년 전쟁을 촉발하는데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탈진한 기독교세계는 종교전쟁 시대를 종식시킨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Treaty of Westphalia)의 정교 분리를 환영했다.

그때부터 서유럽과 신생 북미 국가들은 국가권력과 신앙권리의 분리를 강조했다. 종교자유가 선포되었고, 대부분 실천되었다. 하지만 20세기와 21세기 초반에 정교분리 유형은 종교의 진리주장(들)을 경멸하는 세속주의로 넘어가곤 했다. 기독교의 자리가 글로벌 이스트와 **사우스**로 옮겨가면서, 교회는 중국과 북한, 나이지리아, 및 세계 도처의 무수한 지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교회사에 기록된 종교핍박과 종교자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숙고하게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으며, 그리스도 안의 무수한 형제자매들이 수년 동안 체험한 핍박을 성찰할 때 우리에게 겸손해지라는 권유가 있다.

C. 고백의 역사: 신학적 관점

교회의 역사적 경험은 그 고백의 모판이었다. 북미개혁교회는 성경의 교훈과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연합의 세 형식(Three Forms of Unity)—벨직 신앙고백서(156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 도르트 신경(1618-1619)—을 수용했다. 그것들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거센 실제적 도전들이 정치적으로 사회 안에서 표출되기 시작했던 시대와 장소에서 나온 것이다.

이 교리기준들 중 가장 오래된 벨직 신앙고백서는 (1567에 순교자로 죽었던) 기도 드 브레(Guido de Brès)가 로마 가톨릭 핍박자들에게 개혁교인들은 반란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약간 더 온화하고 더 개인적인 신앙교훈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위협을 받으면서 불일치를 다루기 위해 쓰여졌지만 교회 안의 핍박을 확대시켰다. 1619년에 완성된 도르트 신경은 유럽 대륙을 휩쓸게 될 무서운 종교 전쟁 이전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예상하고서, 씌어졌다. 그 전쟁은 베스트팔렌 조약(1648)으로 종식되었다(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다).

그러므로 본 교단의 세 가지 연합의 형식은 심각한 종교핍박의 시대에 대해 낮설지 않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종교자유에 대해 그림을 그려 볼 수 있고 개혁주의 안에서 그 위치를 정할 수 있다. 그 그림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드러내준다. 첫째,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으므로 어떤 인간의 종교적 강요도 무익할 수 밖에 없고 우상숭배적일 수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바르게 속할 수 있는 교정과 구원의 능력이 핍박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 문제에서 크리스천의 의무요 소명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돌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근본적인 것이라고 옹호하는 것이다.

위원회로서 우리는 종종 이 고백적 통찰을 다원주의란 용어로 틀지우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원주의란 우리 모두 문화적 다원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다원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전체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에게 예배처소와 가족, 학교, 기타 사회구조를 제공하신다는 더 깊은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 이 연합체와 기관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로서 보통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크리스천이 거부하는 관점과 실천을 그것들이 구현하^{더라도 말이다}.¹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사회를 건설하려는 사역에 다양하고 상호모순적인 그리스도인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사회 안에서 종교의 공적 실천을 옹호하고 존중하라는 소명을 가진다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단락 53). 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거부하는 정부는 그 본연의 임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소지자인 인간에게 부여된 존엄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한다. 정부가 이 언약을 깨뜨리고 참된 하나님 예배를 금지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할 의무가 있다 (벨직 신앙고백서 28 조). 국가가 공예배를 저지하는 것은 *핍박*의 한 측면에 해당한다. 크리스천 시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이 악과 싸우는데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IV. 오늘의 문제

A. 현대의 핍박문제에 접근하기

이 성경적·역사적·고백적 관점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 핍박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핍박의 경험을 우리가 교회·개인으로서 대항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실질적 악으로 봐야 한다.

어떻게 그 문제에 대적하느냐는 문제는 덜 분명하다. 우리는 종교적 신념과 실천이 위협받는 위험하고 심오하게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다.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수단처럼 다양한 곳에서 정부는 종종 신성모독금지법과 배교금지법을 이용하여 크리스천의 (그리고 다른 소수종교자들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사형까지 동원하여 유린한다. 지난 수십 년간 중동 크리스천의 3분의 2 나 되는 많은 이들이 정부와 극단주의 단체의 직접적 위협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났다. 중국은 종종 (“가정교회”라고 불리우는) 지하 교회들을 전국적으로 혹독하게 단속한다. 서방에선 크리스천들이 자기 신앙과 모순되는 공공정책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 한다.

¹ 스티븐 몬스마의 저서 5 장을 보라. Stephen Monsma, *Pluralism and Freedom: Faith-Based Organizations in a Democratic Society*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12). 더 철학적인 설명을 보려면 마우와 그리핀의 책을 보라. Richard J. Mouw and Sander Griffioen, *Pluralisms and Horizons*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93).

이 몇 가지 예에서 우리는 (1) 제약의 원인(정부, 조직화된 과격단체, 보통 시민), (2) 제약의 대상(개인, 예배 처소, 신앙기반 기관들, 전체 신앙전통), (3) 맥락(소수자 관점에 대한 관용이 별로 없는 다양하고 세속화되는 서방 정부들 혹은 권위적 체제), (4) 반신앙적 행동의 성격과 효과(불편, 공적 지위 상실, 해직, 재산몰수, 사형)에서 의미심장한 차이점을 주목한다.

이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핍박문제에 접근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그러나 우리도 각 사례에 흐르는 단서들을 발견한다. 결국 그것들은 각각 종교와 종교자유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 종교핍박 문제를 깊이 다루기 전에 이 용어를 주의깊게 정의하고 사용하길 원한다.

B. 종교와 종교자유를 정의하기

우리는 종교자유²의 한계와 의미, 종교핍박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종교에 대한 작업적 정의로 시작한다.

기독교적 헌신은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든다. 우리 하나님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권리가 있으시다. 이러한 신학적 의미에서 종교는 우리가 이 주권적 하나님의 형상을 소지한 자로서 개인적·집단적으로 살았던 경험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순종을 실천한 공동체와 개인들의 이해와 실천”이다.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의 신학적 이해가 정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란 용어를 다른 방식으로, 즉 사회과학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호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궁극적 존재근거에 관한 주장을 지향하는 신앙과 실천의 공동체”라고 한 국제관계학자 다니엘 필포트(Daniel Philpott)의 정의를 빌려온다.² 이 사회과학적 접근은 기독교전제에 뿌리내린 신학적 정의보다 더 폭넓은 신앙과 실천을 포용한다. 연구위원회로서 우리는 종종 이 정의를 사용할 것이다. 종교핍박은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악이기 때문이다.

종교자유에 대한 이해는 두 요소를 가진다: (1)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의 종교를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충분히 표현하는 기능과 (2) 국가가 시민의 신앙 표현을 위협하는 자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 달리 말하면, 종교자유는 국가를 제한함과 동시에 강화한다. 정부는 종교를 불합리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 오히려 종교적 개인과 공동체가 번창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 정의는 —여러 종교적 표현이 동일한 정치 공동체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고백적 다원주의를 매력적인 가치라고 전제한다. 한 가지 이유는 실질적이다. 다양한 시민들이 신이나 초월에 대한 이견들에 관해 싸우지 않는다면 공동목적에 대해서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신학적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존중한다면 각 사람은 존엄하게 대우받는 게 마땅하다. 거기엔 “종교자유”라고 묘사될 부분도 포함된다. 하나님만이 구원능력이 있으시기에 어떤 인간의 강요도 무익할 수

² Daniel Philpott, “Has the Study of Global Politics Found Relig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2, no. 1 (2009): 183–202.

밖에 없고 이상숭배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안의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근본적인 것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의무와 소명이다.

물론 우리는 종교자유를 이렇게 확대 정의하는 것에 잠재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만약 종교가 폭넓은 신념과 실천에 확대된다면 종교자유는 매우 강력한 주장이다. 또한 그것은 오용될 수 있는 주장이다. 여기서 종교자유 세가지 조건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종교자유는 실제 사람들과 공동체들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추상적인 “종교”에 속한 게 아니다.*
- *종교자유는 사람과 공동체를 신앙에 대한 부당한 제약으로부터 보호한다. 하지만 그들을 공격과 조롱으로부터 보호하진 못한다. 사회가 개인의 종교를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에게 심한 상처를 주더라도, 종교자유를 위반한 게 아니다.*
- *종교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종교자유는 광범위하게 확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엄밀하게 절대적일 수는 없다.*

C. 국내외 핍박과 종교자유

그러면 이 종교와 종교자유 정의들은 종교 *핍박*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핍박*의 작업적 정의는 단지 “종교자유 공인되지 않는 위반”이다. 종교자유가 신실한 자들을 자신의 종교적 표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면, 종교 핍박은 그 위협이 실재가 될 때 국가가 그 위반들을 예방하거나 자행할 때 발생한다.

지구촌 종교자유 핵심 관찰자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나온 데이터는 지난 10년에 걸쳐서 일어난 종교기반 핍박이 불길하게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적대감의 폭이—비정부 활동조직들의 폭력이나 괴롭힘— 현저하게 충격적 비율로 증가했다. 퓨 분석가들에 따르면 2007년 세계 인구의 45 퍼센트가 사회적 적대 비율 “고도” 또는 “최고도”인 국가들에서 살았다. 겨우 7년 뒤 그 비율은 73 퍼센트로 상승했다. (정부의 규제도 증가했지만 덜 가파르다—고도의 제약 하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 58에서 63 퍼센트로 올랐다.)³

이렇게 점증하는 적대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종교전통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거의 모든 평가에 따르면, 크리스천의 고난이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났다.⁴ 오늘날 종교 핍박의 가장 곤혹스러운 사실 중 하나는 기독교가 그 신앙의 탄생지인 중동의 많은 지역에서 거의 근절될 지경에 처한 현실이다.⁵ 우리는 이미 이라크와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의 크리스천 인구가 급감한 것과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수단에서 비슷한 추세가 있는 것을 주목했다. 우리에게 남은 결론은

³ Peter Henne et al, *Latest Trends in Religious Restrictions and Hostilities*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2015).

⁴ 이 불편한 동향을 주목한 최초의 학자 중에 허드슨 연구소 종교자유 센터(Center for Religious Freedom the Hudson Institute)의 현직 시니어 연구원 폴 마샬이 있다. 그의 선구적인 저서를 보라. Paul Marshall, *Their Blood Cries Out* (Nashville, Tenn.: Thomas Nelson, 1997). 최근 자료는 길버트와 셰아의 저서를 보라. Lela Gilbert and Nina Shea, *Persecuted: The Global Assault on Christians* (Nashville: Thomas Nelson, 2013).

⁵ Philip Jenkins, *The Lost History of Christianity* (San Francisco: HarperOne, 2008).

낙담스럽다. 교회 핍박이 어떤 곳에서는 (예, 중국) 그 성장을 촉진하는 것 같지만, 다른 지역들에선 핍박으로 종종 교회가 죽는다—장기간에 걸쳐서.

우리는 의도적인 기독교 박멸이 주로 무슬림이 다수인 북아프리카에서 남아시아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에둘러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요점을 부각시켜 이슬람에 관용의 기초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서둘러 부연한다. 하지만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들의 반기독교 핍박은 종교간 관계를 심하게 도전한다—또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진작하는 것은 핍박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우리는 본 보고서의 건의 사항 단락에서 그 도전에 대응할 것이다.

종교핍박이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서구의 상황에서도 유사한 유형이 발생하는 것을 보는가?

그 문제를 다룰 때 우선 먼저 종교실천 제약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종교자유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정부는 종교실천을 긴급한 공공목적들에 비추어 고려해야 한다. 이 요점은 *마땅한 절차*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즉 보통 법원이나 유사한 공개재판에 의해서 공개화된 규칙 하에서 종교실천 권리에 대한 주장을 공정하게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은 합당한 절차를 밟고 나서도 국가가 그 권리 보호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 주장이 자유와 사회안정 사이에 합당한 균형을 잡으려는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고려되었다면, 이런 종교실천 제약은 종교핍박의 형식이 되지 않을 것이다.

타당한 절차는 북미와 유럽의 법체계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과거 2 백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신앙인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수습 가지 간섭은 핍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 나름의 법기준에 의거한 경쟁적 주장을 “합리적”이라고 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많은 게 좌우된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시리아, 나이지리아 북부와 같은 절박한 환경에서 크리스천들과 타종교 신자들이 경험하는 실제 폭력과 남용과 대비해 볼 때 북미주의 최신 사례들 중 어느 경우도 자유제약이 희미해진다.

V. CRCNA 의 두 목적

본 보고서를 위해서 우리가 면담한 CRCNA 해외 현장직원들의 경험과 제안을 통해서 본 위원회의 제안사항들이 결정되었다. 그 직원들은 우리에게 한편에선 종교핍박을 대면하는 것이 굉장한—그리고 아마 당황스러운—일이란 점을 상기시킨다. 다른 한편에선, 그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종교핍박에 대한 싸움에서 도덕적 주역으로서 행동하라는 분명한 신학적 명령법의 인격적 측면을 표현한다.

그러면 교회와 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CRCNA 에 건의하는 내용은 두 개의 목적을 중심으로 정리된다. 첫째, 우리는 교회가 세계적인 종교자유와 핍박·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는 우리 교회의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단 산하 기관들의 실제적인 허나 제한된 역할까지 포함한다. 제안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교단 기관들은 교단이 이 긴급한 사안을 국내외적으로 다루는데 필수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다.

A. 교회를 인도하기

북미 교회는 일반적으로 종교기반 폭력과 종교자유 쟁점을 다루는데 침묵했다. 개혁교회적 기초와 엄청난 세계적 역사를 가진 CRCNA 는 그 추세에 반대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해 왔다. CRCNA 교단 기관들은 에큐메니칼 주도사역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종교자유를 진작시키는데 약간 주의를 기울여왔다. 그 노력은 칭찬할만하지만 충분하진 못하다.

우리는 교단과 교회들이 이 문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기를 요청한다. 핍박반대 운동을 구축하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 사역은 종교자유가 만인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실천하는 것이다. 그 신학을 실천하려면 정치·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노선들을 포용하면서 일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동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자유도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신학적 작업은 신념적 다원주의 사회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대사나 의원이나 의회에게도 맞지 않는 일이다. 그것은 명시적으로 교회의 사역이다.

1. 기도하기

단체기도는 핍박에 반대하는 신앙기반 운동을 구축하는 기본출발점이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개혁교회 전통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 방법이 종종 우리에게 신비스럽긴 하다. 핍박에 노출된 형제자매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자신감을 줄 것이다. 게다가, 기도의 과정—고통과 피압박자들을 언급하고, 기쁨의 원인을 확인하고, 실패한 내용과 의심의 순간을 고백하는 과정—은 심오하게 구성되며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만든다.

이것은 주요 건의로 이끈다:

건의: 총회가 각 회중을 권면하여 기도 인도자와 기도팀을 임명하여 종교핍박과 종교자유 쟁점들을 계속 주시하고, 임직자들에게 전반적 상황에 대해 조언하며, 종교핍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장려할 것을 건의한다.

2. 예배, 성경공부, 장년 교육

기도는 핍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의미있는 탈고립적 방식이다. 공동 예배, 장년 주일학교, 성경공부, 기도회, 기타 소그룹 모임 등은 피학대자들의 곤경을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고 나누는 데 좋은 곳이다.

본 교단은 이런 측면에서 사역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른 전반적 건의를 한다:

건의: 총회가 이사회에 지시하여 사회 정의 사무소(Office of Social Justice)로 하여금 각 교회가 국제 기도의 날에 참여하고 그 날 예배를 긴급한 종교핍박 문제에 헌신하도록 강권하는 실천을 유지·확장하게 하도록 건의한다.

국제기도일과 같은 광범위한 노력에 추가로, CRCNA는 교인들이 핍박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자체 내부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위원회는 독창적 자료를 개발하여 장년교육과 성경공부의 도약판으로 쓰게 했다. 독자들은 (여러 개 중) 두 자료에 대한 정보를 www.crcna.org/persecu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문화간, 종교간, 에큐메니칼 노력들

핍박과 싸우는 기초방법은 우리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한 가지 중대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방식은 에큐메니칼 및 종교간 대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CRCNA의 교단 구조 안에서, 에큐메니칼 및 종교간 관계 위원회(Ecumenical and Interfaith Relations Committee)는 에큐메니칼 및 종교간 주도활동을 감독하고 간여한다. 그렇더라도 EIRC가 종교자유와 종교핍박의 문제에 관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위원회가 받은 지시는 핍박, 종교자유, 다원주의, 심지어 노선을 다 아우르는 평화를 강조하지 않는다. 낙관적인 측면은 CRCNA가 폭넓게 에큐메니칼 참여를 한 덕분에 개방된 가능성들이다. 여기에는 세계개혁교회 커뮤니티(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와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Global Christian Forum)에 동참하는 것도 포함된다.

간과된 영역은 피난민을 돌보고 환대하는 장기사역에서 CRCNA 교단 전체와 개교회의 역할이다. 교단은 2010 총회 보고서에서 피난민 문제에 대해 총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이민노동자 맥락에서 다룬 것이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피난민이주의 근본 문제의 하나인 종교핍박을 강조할 수 있는 실제 기회라고 본다.

우리는 종교간 대화와 다른 형태의 문화간 참여가 일부 CRCNA 교인들과 타종교전통의 회중들 편에서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그래서 두려움/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이것은 다음 건의사항으로 이어진다:

건의: 총회가 EIRC에 또한 BOT를 통하여 월드리뉴(World Renew)와 공적 대화 센터(Centre for Public Dialogue)에 지시하여 종교간 그룹과 피난민 그룹과 하는 사역을 고찰하고 핍박의 불의에 대해서 알리는 방식을 전략화하도록 건의한다.

B. 교회 동원하기

우리 교회들은 도덕적 초점을 핍박에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핍박에 대적하는 운동도—사람들을 조직화하여 그 운동의 목적들을 변호(“환기”)할 수 있도록—도덕적 관심과 정보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는 전세계적 핍박에 대항해 동원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입장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CRCNA가 국내 입법부를 압박하거나 국제적 인권계약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로비스트나 법률가, 공적 관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전술적이 아니라 전략적인 변호를 할 때—즉 도덕적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깊이와 넓이를 전달할 때—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크리스천 시민으로서 교인들은 가장 광범위하고 또 가장 특수한 수준에서 동참한다. 하지만 제도로서의 교회들은 교인들의 도덕 비전을 결정해야 하고, 전체 사회에 예언적으로 위치면서도 공공정책의 기능적·구체적 일은 삼가야 한다.

그것은 어디서 CRCNA 산하 기관들을 떠나는가? 첫 단계는 사회정의사무소와 공적 대화 센터가 조직의 우선순위로 핍박을 다루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이 사역기관들이 그 문제를 전담하는 직원을 둬으로써 헌신하는 것이다. 해당 사역부서에서 CRC 교회와 OSJ 네트워크 가입자를 위해 최신 정보를 수집·배포하는데 지정된 직원을 더 늘리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다. 또한 그 직원들은 이미 종교핍박과 종교자유 문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 다른 그룹들과 협업할 수 있을 것이다.

건의: 총회가 이사회를 통해서 사회정의 사무소에 CRC 교회들과 사회정의연구소 네트워크 가입자들에게 핍박 관련 최신 정보를 수집·배포해주도록 요청하게 할 것을 건의한다.

만약 교회나 교인들이 국가와 종교정체성에 관한 갈등이 있게 되면 진지한 정치적·법률적 대변인과 신속하게 접촉해야 한다. 특히 종교자유 주장을 다루는데 기량을 갖춘 공익 법률회사들 중 베킷 기금(Becket Fund)과 기독교 법률협회의 법과 종교자유 센터(Center for Law and Religious Freedom at the Christian Legal Society)가 있다. CRCNA 도 이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 이용 모범 및 결혼 정책 모범”을 작성했다. 이 모범들은 미국 교회들이 결혼식과 다른 행사에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제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독자들은 본 위원회의 협력 웹사이트에서 이 모범을 포함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VI. 건의 사항

- A. 총회가 본 보고서를 다룰 때 연구위원회의 케빈 덴 달크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도록 건의한다.
- B. 총회가 각 회중을 권면하여 기도 인도자와 기도팀을 임명하여 종교핍박과 종교자유의 쟁점들을 계속 주시하고, 임직자들에게 전반적 상황에 대해 조언하며, 종교핍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장려할 것을 건의한다.
- C. 총회가 이사회에 지시하여 사회 정의 사무소로 하여금 각 교회가 국제 기도의 날에 참여하고 그 날 예배를 긴급한 종교핍박 문제에 헌신하도록 강권하는 실천을 유지·확장하게 하도록 건의한다.
- D. 총회가 에큐메니칼 및 종교간 관계 위원회에 또한 이사회를 통하여 월드리뉴와 공적 대화 센터에 지시하여 종교간 그룹과 피난민 그룹과 하는 사역을 고찰하고 핍박의 불의에 대해서 알리는 방식을 전략화하도록 건의한다.
- E. 총회가 이사회를 통해서 사회정의 사무소에게 CRC 교회들과 OSJ 네트워크 가입자들에게 핍박 관련 최신 정보를 수집·배포해주도록 요청하게 할 것을 건의한다
- F. 총회가 이 보고서를 종교 핍박과 자유에 관한 연구 위원회가 받은 지시를 완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위원회를 해산하도록 건의한다.

VII. 결론

전 지구적인 종교핍박 경험은 우리 시대의 큰 도덕적 도전 중 하나다. 그 범위와 잔인성은 공포스럽고, 동일한 이유에서 당혹스럽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1) 우리의 사유를 성경과 역사에 뿌리내리고 (2) 교단적 반응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집중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의 목적과 언약에 신실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 행동의 열매를 꼭 우리가 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종교에 기반한 갈등의 폭이 깊어지는 곳에서 어떤 변화가 우리 생애 안에 일어날 거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 이사야 예언자가 “주여, 어느 때 까지니이까?”⁶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언약을 베푸셨다.

종교적 핍박과 자유에 관한 연구 위원회
 제인 브루인(Jane Bruin)
 케빈 덴 덜크(Kevin R. den Dulk), 위원장
 로버트 주스트라(Robert Joustra)
 조나단 김(Jonathan Kim)
 제임스 패이튼(James Payton, Jr.)
 스티븐 스노우(Stephen R. Snow)
 나지 움란(Naji Umran)
 켄 밴 드 그린드(Ken Van De Griend)
 루쓰 벨트캠프(Ruth Veltkamp)

⁶ 이사야 6:11.